

과 제 명		「재산관리규정」 개정을 통한 임대료 예정가격 체감제도 도입으로 임대사업 활성화 도모			
부 서 명		고객사업처 부대사업팀		주담당자	사무7급 박철영
				협업직원	자산회계팀 사무5급 임경옥
분야	1차	규제혁신* 여부 Y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			
	2차	경제활성화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난·안전 <input type="checkbox"/>	디지털 혁신 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생활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
		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직접입력 :)			
각종대회 수상실적					

1. 추진배경

- 현행 임대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 된 후 수 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장기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찰횟수에 따라 예정가격 체감이 필요
- 임대계약 입찰 시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임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더라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함

2. 추진내용(사업개요)

[재산관리규정 개정]

- 유찰 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감정평가 예정가격을 최대 50%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
- 임대계약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

3. 추진중 어려움 및 해결노력

- 개선 계획 변경(지방자치단체 및 타 동종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한도를 고려하여 50%로 조정) 및 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까지 시간 다소 소요

4. 추진실적

- 임대관련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일상감사 의뢰 : 23. 3. 23.
- 임대관련 제도 개선 계획(안) 수립 : 23. 4. 5.

- 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관련 협조 요청(→자산회계팀) : 23. 4. 5.
- 임대관련 제도 개선 변경계획(안) 수립 : 23. 5. 3.
- 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관련 협조 재요청(→자산회계팀) : 23. 5. 4.
- 재산관리규정 개정 시행 : 23. 5. 19.

5. 기대효과

과제 전	과제 실행 후(성과향상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만 인정 · 입찰시 지속되는 유찰에도 예정 가격 인하가 불가능해 장기 공실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인 이상 유효한 입찰 시 즉시 낙찰 결정 및 계약체결 · 임대계약 유찰 시 즉각적인 예정가격 인하로 계약 추진 · 공실상가 최소화 및 부대수익 증대